

KERI Brief

해외유보소득 국내환류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해외자회사배당 세제 중심으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wlim@keri.org)

중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제도가 유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장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인들의 활동무대로 만들어 그 규모의 확대를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세금 부과가 타당할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는 조세체계를 고수한다면 자본의 국내 유입 감소 및 국외 유출을 발생시켜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나아가 세수입의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보다 해외직접투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상황상 국내 경제(투자 및 고용 등)가 활성화하려면 해외진출기업의 투자소득이 국내로 송금되도록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유인책으로서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8개 국가가 이미 해외유보소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함께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아직도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는 체계(거주지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거주지주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에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해외유보는 국제적

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하여 국내의 투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고, 해외진출의 경제적 수익이 국내로 환류되지 못해서 연구개발이나 고용 등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굳이 해외직접투자자로 인한 소득, 특히 사업과 관련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배당소득만이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국내의 투자에 대한 세부담의 공평성을 강화하고 투자배분의 왜곡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해외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하여 국내로 자금 유입을 유인하고, 본사 소재지로서 추가적인 세(稅)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 시 그 효과는 2009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일본은 제도 도입 전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해외내부유보액도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하는 등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다. 일본 국내에 환류한 자금도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고용관계지출에 30% 정도 쓰여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설계로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5% 익금불산입하는 방식의 경영참여소득면제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자회사의 최소지분율을 국제적 동향과 맞도록 10%로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CFC세제(특정외국법인세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중비과세 또는 원천지국에서의 경과세 현상 등 거주지국의 과세

기반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해외배당소득에는 제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한편, 조세 회피 방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수동소득 간주 관련 CFC세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지원해주어야 하며, 외국의 예처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경우에 스스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는 능동적 사업활동으로 보아 CFC세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1. 검토 배경

□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기업과 자본의 대외진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접투자금액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보다 큰 상황이 2006년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어, 직접투자의 국내외 균형을 모색할 방안 필요

- 지난 10년간 해외직접투자자는 3.7배 증가했지만, 국내유입 외국인 직접투자자는 1.8배 증가하는데 그쳤음. 특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배당금은 최근 증가추세지만 그간 당기순이익도 크게 증가해왔으므로, 배당되지 않은 사내유보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국내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U-turn시키는 것도 좋지만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획득한 이익을 국내로 환류시키는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하며 그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

□ 한편 국외원천소득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해외소득 유보증가 등 거주지주의(residence approach, 글로벌주의)의 한계에 따라 여러 나라들이 과세방식상 거주지주의에 원천지주의(영토주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은 국내 발생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발생 소득을 포함하는 전 세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국내 발생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함¹⁾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0여 개국 이상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실정임. 거주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도 해외유보소득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유보소득을 국내로 송금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했음

1) 오윤, 「세법원론」, 한국학술정보, 2015, p.885

○ 미국은 2004~2005년 중에 한시적으로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35%의 법인세율이 아닌 5.25%의 경감세율을 적용, 당시 해외유보소득 중 절반인 3천억 달러 이상이 미국에 유입되었음.²⁾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다시 송금세율을 10%p로 인하한다고 함

○ 일본도 해외 획득 이익의 대부분을 국내에 환류시키지 않고 유보하는 경향이 심해지자 2009년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했음. 제도 도입 연도에 해외자회사로부터 일본 본사로 3조 엔이 배당, 국내환류배당금이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해외투자수익의 국내환류비율 또한 전년 대비 23.1%p 증가했음

-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에서 별다른 유인책 없이는 거주지주의 과세 회피를 위해 과도한 해외소득 유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거주지주의 과세 회피를 위한 해외유보소득의 증가와 이에 따른 과세이연³⁾은 국내외 투자에 대한 세부담의 차이를 발생시켜 투자배분의 왜곡이 될 수 있으므로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함

○ 특히 과도한 현지유보는 해외진출의 경제적 수익이 국내로 환수되지 못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해외투자된 유보소득의 국내환류를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면서 세부담에 공정성(중립성)을 해결할 수 있는 과세제도 개선이 고려되어야 함

- 국외원천소득 과세에 대한 완화는 전세계단위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을 모색할 수 있으며,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해외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의 국내 송금을 촉진, 경기회복과 세수입에 도움이 될 것임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로 환류하든 현지에서 유보되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완화된 세금을 부과한다면 국내외 투자에 대한 세부담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투자배분의 왜곡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본 연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 과세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제적 동향 검토를 통해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특히 해외유보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이었던 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뉴스핌, "트럼프의 히든카드... 미국 송금세가 뚝길래", 2016.12.9. 보도 참고

3) 거주지주의 과세가 환류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해외 소득을 현지에 유보하여 이후에 청산소득 등 세부담이 낮은 다른 형태의 소득으로 전환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세부담을 절감·회피할 수 있기 때문임

II.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검토

1.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중반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 해외직접투자금액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을 앞지른 후 현재까지 직접투자의 국내외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음

- 2007년부터는 해외직접투자금액이 200억 달러를 웃돌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해외직접투자도 3.7배 증가하였음

- 이에 반해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2015년 처음으로 2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였고, 지난 10년간 외국인직접투자 또한 1.8배 증가하는데 그쳤음

□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당기순이익은 증가 추세였다가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2013년부터는 감소하고

있음. 해외현지법인의 국내로의 배당금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해외현지법인 유보잔액의 통계는 없지만 당기순이익은 2010년 크게 증가한 후 100억 달러를 꾸준히 웃돌고 있음. 이에 반해 국내로의 배당금 증가는 미미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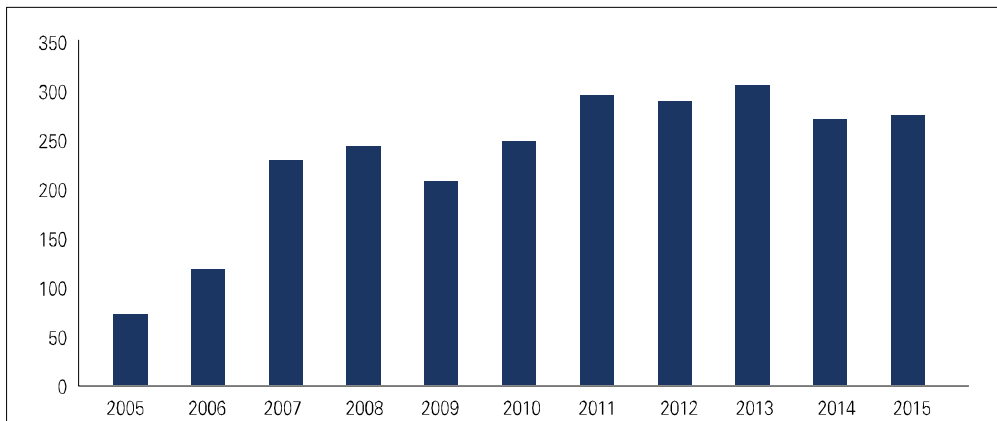
- 배당되지 않고 사내유보된 당기순이익이 크게 누적되어 있을 것인 만큼, 국내로의 재투자 대신 해외 유보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해외시장에서 획득한 이익을 대부분 국내에 환류시키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는 경향이 있었고, 2009년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 도입 전에는 해외내부유보액이 매년 2~3조 원 이상 증가하여 2006년에는 약 17조 엔에 달했음⁴⁾

4) 經濟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2008. 5.

〈그림 1〉 해외직접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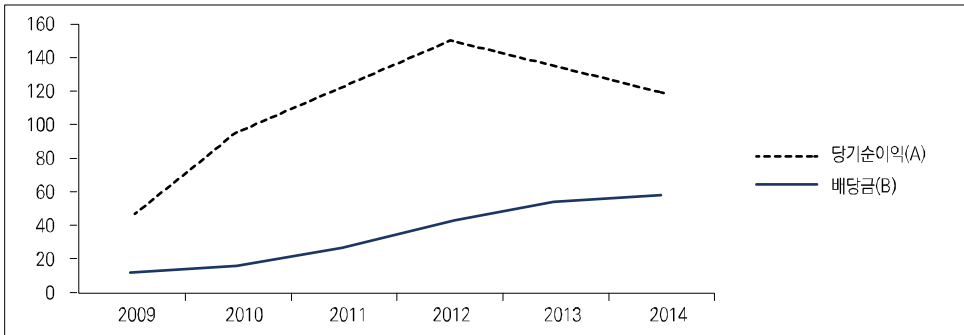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0~2015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그림 2〉 해외현지법인 당기순이익 및 배당금 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0~2015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 따라서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국법인의 투자수익인 해외유보소득을 국내로 환류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 유인책으로서 과세제도 개편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2. 우리나라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 개요

□ 우리나라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전세계소득에 과세하는 ‘거주지주의(residence approach)’ 과세 원칙에 입각한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는 전세계소득을 과세하고,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함

-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가 국내거래에 대한 과세에 비교하여 세금부담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측면⁵⁾에서 나라마다 국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국외소득 면제방법(exemption method)’과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tax credit method)’이 그것임

○ 국외소득면제방법은 자국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원천지주의(source approach)’라고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은 자국 거주자의 국외원천 소득에는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 공제하는 것을 말함. 거주자라면 모든 소득을 과세한다는 의미에서 ‘거주지주의’라고 함

- 우리나라는 이중과세조정의 경우에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적용함.⁶⁾ 또한 해외자회사배당에 대해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해외자회사가 벌어들인 소득 중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국내로 송금되는 시점에 과세되며, 이러한 과세이연의 예외 규정으로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세제라 불리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5) 국외원천소득을 획득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모두에서 과세되므로 모든 국가가 이와 같은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를 가지고 있고 특단의 국제적 이중과세조정장치가 없을 경우 국제거래는 위축될 수 있음

6) 특례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과세를 면제한 배당소득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함. 2015년 이전 소득분까지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p>□ [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⁷⁾⁸⁾</p> <p>-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방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법인세액으로 봄⁹⁾</p>	<p>○ 그러나 2014년 개정으로 해외자회사 지분율이 상향되고 외국손회사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이 강화되어 이중과세 조정의 취지가 약화되었음</p> <p>-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25% 이상 출자¹¹⁾ 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함</p>								
<p>□ [간접납부세액공제] 또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며,¹⁰⁾ 이를 간접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함</p> <p>- 내국법인이 자회사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해외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는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간접적으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해외 진출의 조직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p>	<p>7) 법인세법 제57조제1항</p> <p>8) '손금산입방법'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도 없이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세액공제방법'에 의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2015년 개정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일괄한도 방식이 폐지되고 국가별한도 방식만 인정됨(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p> <p>9)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함, 법인세법 제57조제3항</p> <p>10)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해외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음</p> <table border="1" data-bbox="742 1153 1278 1262"> <thead> <tr> <th rowspan="2">해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th> <th colspan="2">수입배당금액</th> </tr> <tr> <th>해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th> <th>해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11) 2015년부터는 해외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해외자회사 지분율을 그간 10%에서 25%로 하여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였음. 정부는 이와 같은 개정에 대해 10% 이상 25% 이내 지분만 있는 경우 단순한 지분투자에 따른 해외자회사가 포함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이 있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음</p>	해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액		해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해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해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액								
	해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해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표 1〉 현행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장치

구 분	내국법인	외국법인
국내원천배당소득	수령배당공제	(N/A)
국외원천배당소득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과세권이 없음

□ **특정외국법인세제(이하 'CFC세제'라 함) 거주주주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외 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곳에 소득을 유보하는 방법을 규제하기 위한 세제임. 즉, 조세회피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내국인(내국법인, 거주자)이 출자한 경우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함¹²⁾)의 배당가능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임¹³⁾**

- 적용대상자인 '내국인'은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하며, '조세회피처'는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해당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함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배당가능유보소득에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됨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

□ **거주주주의 과세방식 및 그 이중과세조정 방식으로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현행 세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 첫 번째는 거주주주의 과세방식이 자본수출중립성¹⁴⁾을 통한 세계경제의 효율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수출중립성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임

○ 자본수출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거주주주의를 채택하여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하는데, 이미 많은 국가들이 다국적기업의 자국 유

치와 자국기업의 해외 사업활동 지원을 위해 거주주주의에서 이탈하였음. 2009년에는 일본과 영국도 여기에 동참하였고 미국에서도 원천주주의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¹⁵⁾

○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및 회피로 인하여 국내 세액이 줄면 세부담 차원에서 국내투자에 비해 저세율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유리하게 되어 투자배분을 왜곡시키고 국내외 투자에 대한 세제중립성(공평성)에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투자왜곡은 경제효율성을 저해함¹⁶⁾

○ 특히 거주주국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현지 소득을 거주주국으로 환류시키지 않음으로써 자본수출국의 해외진출 장려에 대한 이익이 국내로 환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12)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과 해외지주회사는 특정외국법인세제를 적용하지 않음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14) 자본수출중립성(capital export neutrality)은 자국의 자본이 어느 나라에 투자하든 그 과실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담이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임. 즉 투자나 경제활동을 국내에서 행하는 것과 국외에서 행하는 것 사이에 세제상 중립성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임; 구자은·오윤·임동원, "통상규범과 국내세법의 조율방안", 「조세학술논집」제29집제2호, 한국국제조세학회, 2013, p.256

15) Committee on Ways and Means Press Release, "Camp Releases Tax Reform Plan to Strengthen the Economy and Make the Tax Code Simpler, Faire and Flatter", 2014.2.26.

16) 해외소득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해외에 유보하거나 세금을 절약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들여 조세전략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유발시킴. 뿐만 아니라 국내로 환류되지 않은 자금은 해외에서만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또한 투자배분이 왜곡되어 경제효율성을 저해함

- 두 번째는 거주지주의가 자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임.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의 기업은 해외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평균 이상의 세율국가의 기업은 원천지국 뿐만 아니라 거주지국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함¹⁷⁾

- 위와 같은 문제들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거주지주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에 유보할 가능성이 높음. 과도한 현지 유보는 ① 조세 중립성을 해쳐 국제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하며, ② 해외진출의 경제적 수익이 국내로 환수되지 못하는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해외시장에서 획득한 이익을 과도하게 해외에 유보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연구개발이나 고용 등이 해외로 유출되게 되므로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위한 유인이 필요함

- 이상과 같은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해외유보소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에서도 굳이 해외 직접투자자 인한 소득을 포함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국외소득 면제방식을 병행하여 채택하고 있고, 최근 일본에서도 일부 국외소득면제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제도 개선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큼

○ 국제적 흐름에 부합되도록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로 환류하던 현지에서 유보되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원천지국에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면 국내의 투자에 대한 세부담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투자배분의 왜곡도 해결되어 과도한 해외유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이러한 해외유보소득 중 해외 조세회피처 등의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외소득을 그 자회사에

유보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CFC세제임. 그러나 국제 거래의 증가 및 각종 금융제도의 발달로 해외유보소득의 과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음

- 특히 각국의 세수확보가 치열한 상황에서 CFC세제와 같은 규제보다는 저세율 국가에 유보되고 있는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이 가능한 신속하게 국내로 환류되도록 하는 세제상의 유인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또한 우리 제도 중에는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서 수동소득(이동성소득)¹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동소득 업종이 주된 업종인 경우¹⁹⁾ 국내에서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영역이 존재함. 조세회피처에 사업에 필요한 고정시설을 두고, 그 시설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CFC세제의 적용 배제 규정이 협소하게 인정되고 있음

○ 이는 일본의 제도를 참고한 것인데, 일본이 조세회피처대책세제 외에도 다른 보완제도²⁰⁾를 두고 있어 실제로는 거의 부담이 되지 않는 것과는 다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7) 본사는 한국(법인세율 22%)과 영국(법인세율 20%)에 두며 자회사는 아일랜드(법인세 12.5%)에 소재하고, 세전이익은 1,000억 원으로 동일하고 모두 본사로 송금할 경우, 한국의 본사는 아일랜드에서의 법인세 125억 원 이외에 법인세 95억 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영국의 본사는 국외소득에 대해 소득면제(원천지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의 추가납부세액은 없음

18) 이자소득이나 사업과 무관한 배당소득

19)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20)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

III. 국제적 동향 및 일본 제도

□ 어떤 제도가 자국의 경제에 장기적으로 볼 때 유리할 것인가를 평가하는 관점에서는, 국외활동을 하는 자국 거주자에게 당장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많은 경제인들이 자국을 그 활동의 무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것임²¹⁾

- 어떤 한 지역에 본부를 두고 국외로 진출해야 하는 국제적 기업이나 자본의 입장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국외소득면제방법의 원천지주의를 채택한 지역에 본부를 두게 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원천지주의를 일정 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음
- 원천지주의 확산의 국제적 동향과 해외유보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이었던 일본의 제도 도입 및 그 효과를 검토하여 우리나라가 채택해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원천지주의의 점진적 확산 및 부분적 수용

□ OECD 국가들은 대체로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기업이나 자본을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국외소득면제방법을 채택할 동기를 가지게 됨. 실제로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국외소득면제방법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이 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대부분의 국가들과 일본은 국외소득면제방법과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병용하고 있음²²⁾

- 반면, 추가적으로 징수할 세금을 포기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주요 OECD 국가 중 미국은 완전한 형태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따르고 있음

□ 특히 많은 OECD 국가들은 사업소득 및 사업소득 유사 배당소득²³⁾에 대하여 거주지주의를 포기하고 원천지주의에 따른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같은 수동소득(passive income)인 '이동성소득(mobile income)'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의 과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상대적으로 사업소득과 그에 준하는 배당소득 등 '비이동성소득(immobile income)'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하는 것임. 비이동성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 방식의 과세를 하는 제도를 "경영참여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라고 함²⁴⁾
- 비이동성소득에는 원천지국에서 신고에 의한 누진세율 과세로 형평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이동성소득에는 원천지국에서 소득획득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낮은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만 이루어지는 점 때문임

21) 오윤·임동원,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 「조세학술논집」 제31집제2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5, p.187

22)金子 宏, 「租税法」, 弘文堂, 2010, p.430

23) OECD 국가들의 국외원천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음(오윤, 전계서, p.891, 표 재구성)

원천지주의	거주지주의
* EU국가: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체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등 *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 한국, 미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

23) 오윤·임동원, 전계논문, p.189.

〈표 2〉 국외원천소득 이중과세 조정 외국사례

구 분	간접 (해외자회사배당)		직접
한국	지분을 25% 이상	〈세액공제〉 자회사 100%	외국납부세액 100%
미국	지분을 10% 이상 의결권 5% 이상	〈세액공제〉 자손·증손 회사까지 100%	외국납부세액 100%
일본	지분을 25% 이상	〈소득면제〉 자회사 95%	외국납부세액 100%
영국	지분을 10% 이상	〈소득면제〉 자손회사 100%	외국납부세액 100%
독일	지분을 제한없음	〈소득면제〉 자손회사 95%	소득면제 100%
프랑스	지분을 10% 이상	〈소득면제〉 자손회사 95%	소득면제 100%

- 미국도 최근 십수 년간 미국 하원 예산소위(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는 내국세입법 제 245A조로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음. 외국의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기업이 공평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기업 자금의 본국환류를 막는 '봉쇄 효과(lock out effect)'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함²⁵⁾

2. 일본의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

□ 국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의 경우²⁶⁾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 조정을 꾀하더라도 배당금을 수령할 때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 해외자회사 유보이익의 국내 환류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기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2009년 세제 개정 시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함

- 2008년 5월 경제산업성의 해외사업활동 기본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유보하고 있는 금액은 해마다

2~3조 엔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6년 말에는 약 17조 엔에 달한다고 보고되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 획득한 이익을 일본으로 환류시키는 선순환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짐에 따라 2009년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²⁷⁾

25) Joint Committee on Taxation, Technical Explanation of The Tax Reform Act of 2014, A Discussion Draft of The Chairman of The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to Reform The Internal Revenue Code: Title IV — Participation Exemption System for The Taxation of Foreign Income, 2014.2.26. 참조

26) 일본의 2008년 최고 법인세율은 30.0%(현재 23.4%), OECD 평균은 2008년 23.9%(현재 22.5%)임

27) 일본에서는 2009년의 해외자회사배당익금불산입제도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개혁으로 평가되고 있음; 田中義人, “平成21年度 國際課稅關係の改正”, 『國際稅務』 Vol 29. No.6, 2009.6, p.15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여 이로부터 잉여금의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과세대상인 익금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수취배당금을 내국법인의 지분비율이 25% 이상인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함²⁸⁾

-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배당을 지급하는 '외국자회사'는 내국법인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중 다음 두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말함²⁹⁾³⁰⁾

○ 해당 내국법인의 지분비율이 ①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등에 대한 보유비율 또는 ②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중 한 쪽이 25% 이상일 것(지분비율요건)

○ 위 지분비율이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 이전 6개월 이상 계속될 것(계속보유요건)

-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잉여금의 배당 중,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은 배당금 중 이에 관한 이자비용 등으로서 그 배당금의 5%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임.³¹⁾ 즉, 배당액의 95%가 익금불산입 대상이 됨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배당금액의 추이를 보면 외국현지법인에서 일본으로의 배당금은 1996년에서 2014년 사이 약 5배 확대되었고, 일본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의 국내 환류 움직임 또한 중장기에서도 증가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 외국현지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은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 도입 전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음. 2009년 제도의 도입으로 일본의 국내환류배당금이 3조 엔을 웃돌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배경에는 제도 도입의 영향이 있을 것임³²⁾

- 특히 2009년 제도 도입 이후에 해외내부유보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수익의 국내환류비율이 2009년 72.3%로 전년 대비 23.1%p 상승하였고, 2010년에는 95.4%까지 증가하였음. 해외내부유보액의 감소에 제도 도입이 큰 역할을 했고 해외투자수익의 국내 환류라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28) 일본 법인세법 제23조의2

29) 일본 법인세법 제23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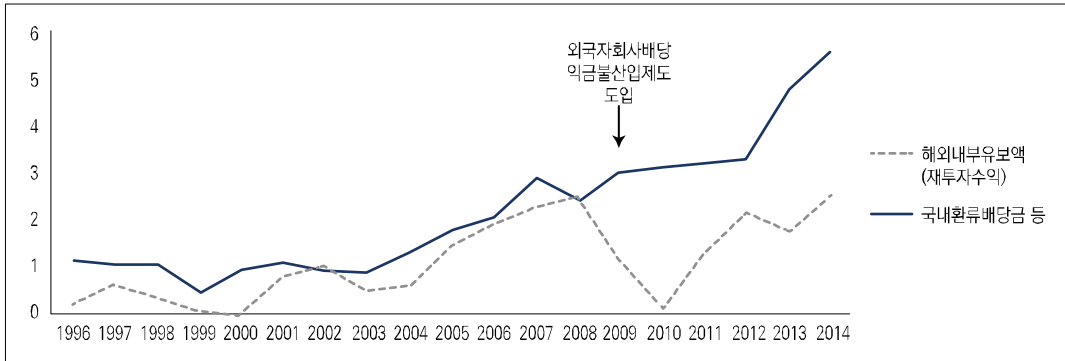
30) 한편, 위 요건은 조세조약상 해외자회사 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으로 완화하고 있음(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4항). 일본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이중과세배제조항의 대상이 되는 현지 자회사범위에 관하여 25%보다 낮은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는 미국(10%), 호주(10%), 브라질(10%), 프랑스(15%)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이 있음

31) 일본 법인세법 제23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2항

32) 다만, 일본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실적 개선과 엔화 약세 등의 영향도 있을 수 있음

〈그림 3〉 일본 해외직접투자 관련 배당금액의 추이

(단위: 조 엔)



자료: 일본 재무성·일본은행, “국제수지통계”

〈표 3〉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의 용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본)

(단위: %)

구 분	연구개발·설비투자	고용관계지출	임원보수	주주배당	자사주매입	차입금상환	기타	모름
배당금의 용도	20.2	9.0	1.5	8.7	0.3	13.4	13.8	54.9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2014 해외사업활동 기본조사 결과”

- 2014년 일본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환류한 자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모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다음으로 ‘연구개발·설비투자’라는 응답이 많음. 여기에 고용관계지출까지 더하면 30%에 달함. 따라서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가 국내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³³⁾

□ 일본은 종전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했으나 2009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하였음. OECD 국가들이나 일본의 예를 볼 때 우리나라도 해외투자소득의 국내 환류를 억제하는 봉쇄효과 해소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이 필요함

-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방식을 도입하면 세계 각국에 있는 자회사들로부터 배당소득 수령 시 본사 소재지국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게 되어 다국적기업 본사로서는 매우 유리한 소재지가 될 수 있으므로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33) 이에 대해 미국이 2004년에 도입한 환류 촉진목적의 세제인 본국 투자법(HIA : Homeland Investment Act)에 있어서는 환류된 배당금 대부분이 자기 주식을 구입하거나 배당하는 등 주주 환원에 쓰였다는 분석이 있음; Mitchell Oler, Terry Shevlin, and Ryan Wilson, Examining Investor Expectations Concerning Tax Savings on the Repatriations of Foreign Earnings under the 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 JATA, Vol. 29, No.2, Fall 2007, p.26.

IV. 해외진출기업 유보소득의 국내환류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 저세율국에 대한 소득의 해외유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조세회피처에 해외자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으로 과세하는 조세회피처 과세제도(CFC세제)를 두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규제책만으로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자회사 소득유보를 막기 어려우며, 내국법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해외유보소득을 국내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상의 유인책이 필요함. 이에 관해서는 일본이 최근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하여 해외유보소득을 국내로 환류시킨 것이 참고할 만함

○ 해외발생소득에 대해 국제적 흐름에 부합되도록 원천지국에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면 국내외 투자에 대한 세부담의 공평성이 강화되어 국내외 투자배분의 왜곡이 해결되므로 과도한 해외유보를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가 도입된다면 CFC세제도 이에 맞게 개정해야 하며, 특히 조세회피 방지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여 내국법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지원해야 함

1.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소득면제제도 도입

□ 해외유보소득의 국내환류를 위해서는 해외소득에 대하여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해야 함. 국외소득 면제방식을 통해 거주지국에서 해외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를 배제함으로써 해외현지법인의 국내모기업에 대한 현금배당(자금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임

- 면제 대상 국외소득은 이동성소득(수동소득)을 제외한 비이동성소득(사업소득과 그에 관한 배당소득)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할 것임

○ 현재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OECD 국가들 중 대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만 과세면제를 하는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이는 해외배당소득이 사업의 위험에도 동참하는 능동사업 활동의 결과로 창출된 소득이라는 성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정지분비율 이상의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비용을 제외하고 과세면제를 해주는 방안이 적합함.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5% 익금불산입하는 방식의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함

○ 현행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법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도 해외자회사의 적용비율로 25%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에 대하여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적을 것임. 다만,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최소지분율로 10%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 흐름에 맞도록 10%로 낮추는 것이 타당함

○ 100%가 아닌 95% 익금불산입 부분 면제방식은 해외배당소득 창출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등을 손금산입해주고 있기 때문에 5%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³⁴⁾

- 과세면제되는 해외배당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으므로써 이중혜택을 배제해야 함

34) 비용의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5%를 일괄공제하는 것임. 수입배당액에 관련되는 비용 상당액은 모회사의 비용 중 해외자회사배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만 구분하여 공제하여야 하지만, 이들 경비를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수익에 대응하는 경비의 발생상황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도의 간소화 및 독일·프랑스·일본 등의 사례로 보아 5%라는 일정비율 공제가 적당함

▣ 다만,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중 과세 또는 원천지국에서만 경미한 과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거주지국의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지국 과세요건’을 두어 제도의 적용대상을 제한해야 함

- 원천지국의 과세요건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해외배당소득 국외소득면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 과세관청이 설정한 black list³⁵⁾에 열거된 경과세국 등 소재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배제
 - 조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은 배당 배제

2. 특정외국법인세제(CFC세제) 보완

▣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특정외국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함

- 다만,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특정외국법인이 앞서 언급한 ‘원천지국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거나 해당 국가에 소재한다면 CFC세제를 적용해야 함

▣ 그리고 특정외국법인이 능동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획득하는 소득이 형식상 수동소득(이동성소득)에 포함된다고 하여 이를 규제하는 것은 조세회피 방지 목적이라는 CFC세제의 운영 취지와 맞지 않음

-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조세회피의 의도나 결과가 없었다면 주된 업종³⁹⁾이 수동소득이더라도 CFC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국제적인 경제환경에서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 목적 외의 필요에 따라 해외에서 연구개발 활동 등 능동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특히 지식재산권의 보유를 전제로 소득이 발생하는 업종은 지식재산

권을 창출하기 위한 능동적 사업활동이 전제되는 만큼 예외가 필요함

- 외국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에 관련해서는 CFC세제를 신중하게 적용하여 자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지원해주고 있음

○ 영국은 지식재산권이 6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특정외국법인으로 이전되어 그 이익에 중대하게 기여한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음.³⁷⁾ 미국은 특정외국법인이 지식재산권을 직접 개발하여 제3자로부터 받는 로열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능동적 로열티 예외 조항³⁸⁾을 두고 있음. 일본 역시 특정외국법인이 지식재산권을 개발하거나, 사업에의 사용을 위하여 취득 또는 라이선스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³⁹⁾

- 우리나라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료의 경우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스스로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는 능동적 사업활동의 결과물로 보아 CFC세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

34) 비용의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5%를 일괄공제하는 것임. 수입배당액에 관련되는 비용 상당액은 모회사의 비용 중 해외자회사배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만 구분하여 공제하여야 하지만, 이들 경비를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수익에 대응하는 경비의 발생상황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도의 간소화 및 독일·프랑스·일본 등의 사례로 보아 5%라는 일정비율 공제가 적당함

35) CFC세제의 조세회피처 개념과 동일하게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한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해당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조세정보교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조세행정의 투명성이 낮은 등의 요건을 두어야 함. CFC세제의 적용대상 중 추가요건에 해당하는 원천지는 경영참여 소득면제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36)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소득을 현재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37) Finance Act 2012(c.14) Schedule 20 Part 9A section 371D

38) active royalties exception, 미국 내국세입법 §954(c)(2)(A), Treas. Reg. §1.954-2(d)'

39)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의17의2 제15항

V. 요약 및 결론

▣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제도가 유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장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인들의 활동무대로 만들어 그 규모의 확대를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세금 부과가 타당함**

-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면 국가 간 세 부담 격차가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는 조세체계를 고수한다면 자본의 국내 유입 감소 및 국외 유출을 발생시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나아가 세 수입의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보다 해외직접투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상황상 국내 경제(투자 및 고용 등)가 활성화하려면 해외진출기업의 투자소득이 국내로 송금되도록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유인책으로서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 도입이 필요함**

- OECD 34개 회원국 중 28개 국가가 이미 해외유보소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미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 등과 함께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아직도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는 체계(거주지주의)를 유지하고 있음

○ 현행 제도 하에서는 거주지주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에 유보할 가능성이 높음. 과도한 해외유보는 조세중립성을 해쳐 국제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하여 국내외 투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고, 해외진출의 경제적 수익이 국내로 환수되지 못하여 연구개발이나 고용

등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굳이 해외직접투자자로 인한 소득, 특히 사업과 관련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듦. 우리나라도 해외배당소득만이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국내외 투자에 대한 세 부담의 공평성을 강화하고 투자배분의 왜곡을 개선하여야 함

-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해외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하여 국내로 자금 유입을 유인하고, 본사 소재지로서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 시 그 효과는 2009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음. 일본은 제도 도입 전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해외내부유보액도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하는 등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음

○ 일본 국내에 환류한 자금도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고용관계지출에 30% 정도 쓰여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5% 익금불산입하는 방식의 경영참여 소득면제 제도를 도입해야 함**

- 능동사업 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 면제를 해주는 것이므로 해외자회사의 지분 비율을 25%로 설정하고, 해외배당소득 창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95%의 부분 면제방식을 적용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자회사의 최소지분율을 국제적 동향과 맞도록 10%로 낮추어야 함

- 그리고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CFC세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

○ 다만,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중비과세 또는 원천지국에서의 경과세 현상 등 거주지국의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해외배당소득에는 제도 적용을 배제해야 함

- 한편, 조세회피 방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수동 소득 간주 관련 CFC세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지원해주어야 함. 외국의 예치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경우에 스스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는 능동적 사업활동으로 보아 CFC세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